

백천장학 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재단법인 백천장학(문화)재단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)

- 가. 본 법인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.
- 나. 대상자는 국가별, 출생지, 출신학교, 나이, 성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- 다. 본 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는 승가교육 및 일반교육 발전을 위하여 대학교, 대학원의 정규과정(야간 등의 특수대학, 특수대학원 제외)에 재학하는 자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비보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장학생의 선발)

- 가. 장학생은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장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본 재단의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발한다.
- 나. 외국학교 재학중인 외국인도 “가”항과같이 선발한다

제4조(지급인원수와 지급액 결정)

법인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당해 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장학금의 총액을 결정한다.

제5조(수혜자의 부담)

- 가. 장학금 수혜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.
- 나. 본 재단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혜자에게 장학생 선발 시 제출된 학업계획서에 따른 학업성과물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장학위원회의 구성)

본재단은 장학위원회를 구성할수있다

장학위원회는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본 재단의 이사와 실무책임자 및 교육계 인사로 구성한다.

제7조(장학위원회의 기능)

- 가. 장학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참석 2/3이상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학교별, 과정별 대상인원과 지급액의 결정
 - 2. 각급 학교별 피 추천 인원수의 결정
 - 3. 대상인원의 심사 및 대상자 선정
- 나. 장학위원회는 실무책임자에게 다음을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장학생 친목단체의 구성과 지도

2. 회지의 발행과 보급

제8조(장학금의 지급)

- 가. 장학금 지급은 수혜학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나. 그러나 학교의 요구가 있을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수혜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해당학교 명의의 금융계좌로 일괄 송금할 수 있다.
- 다. 장학금 지급은 1학기, 2학기 년 2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지급금액은 대학, 대학원 학기별 등록금에서 중단추천장학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라. 본 재단은 입학 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추천서류 없이 졸업 시까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마. 각 과정은 각 해당 수업년한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
(학사 4년, 석사 2년, 석박사통합과정은 석사2년)
- 바. 학사과정을 이수한 백천 장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, 성적 우수자(학사평균 4.0 이상)에 한해 연속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.
- 사. 외국학교 장학생은 년 1회씩 일정금액을 졸업시까지 지급한다

제9조(장학금 지급중지)

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- 가. 학교에서 징계(제적, 정학) 처분을 받은 경우
- 나. 대상자가 승려인 경우 중단으로부터 탈종 처분을 받은 경우
- 다. 전(전)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4.5점 기준 3.0점 미달인 경우
(성적미달 1회 시 경고하고 2회 시에는 장학생 자격을 박탈한다.)
- 라. 휴학중인 경우
 - ① 군 복무기간
 - ② 기타 질병 등의 경우 최장 1년만을 인정한다.
- 마.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바. 타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
- 사.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요구가 있는 경우

제10조(사무처리)

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재단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가. 신입생
 - 학업계획서(재단양식(양식번호BF001))
 -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사본
 - 학교장(주임교수) 추천서
 - 수혜자 통장 사본

나. 재학생

- 학업계획서(재단양식(양식번호BF001)) : 기 제출분과 변동 사항 발생시
- 전학기 성적증명서
- 등록금고지서 사본 - 학업성과물(필요시)

(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www.bccf.or.kr [백천재단] - [장학사업]에 있음.)

★ 이 규정은 2020년 10월부터 변경되어 적용한다

2020년 10월 1일

재단법인 백천장학재단
이 사 장 조 명 하